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제1장 자치법규의 체제

제2장 자치법규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제3장 용어와 표현

제4장 문장 작성의 원칙

제1장 | 자치법규의 체제

1. 의의

자치법규는 기본적으로 자치법규의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명은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칙은 자치법규가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자치법규의 본체에 해당되며,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이다.

규정할 사항의 종류·성질·분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서 바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규정내용이 기술적·전문적이거나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 별지 서식 등을 만들어 규정하기도 한다.

2. 자치법규의 제명

가. 자치법규 제명의 결정 원칙과 표현방식

- 1)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
- 2)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거나 법령과 관련하여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과 관련되어 제정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제명의 간결성과 내용의 대표성 문제는 종종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시적·특례적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는 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 간결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흔히 ‘등’자를 제목의 주된 내용의 표시 다음에 붙이는 경우가 많으나 주된 내용이 둘 정도인 때에는 주된 내용을 모두 열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 4)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과 같을 수 없으며, 다른 자치법규와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법령 형식 및 내용에 따른 제명 구분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형식에 따라 구별하여 표현하여야 하는데 조례는 일반적으로 「○○조례」 또는 「○○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붙이고, 규칙은 「○○규칙」 또는 「○○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붙인다. 어떤 경우에 「○○조례」로 하고, 어떤 경우에 「○○에 관한 조례」로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자치법규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간결하게 표현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조례」로, 자치법규의 내용이 복잡하여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할 때에는 「○○에 관한 조례」로 쓴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일부 규정에 대해 조례를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사항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명을 붙이도록 한다.

어떤 사항을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기본조례」 등과 같이 기본조례와 개별조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제명을 붙이는 것이 자치법규 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가법령의 경우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²⁶⁷⁾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각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규율 내용 등에 따라 독자적인 효력을 갖게 되므로, 조례 상호 간의 관계는 그 적용 범위에서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어떠한 조례가 그 내용상 해당 규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면서, 그 제명을 ‘---기본 조례’라고 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규정 등을 별도로 두어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이와 같이 일반적인 우선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조례에서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과 제명에 있어 기본조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조례를 구속하고 각 개별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안양시기본조례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등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기본조례라는 이유만으로 안양시에서 제정한 다른 모든 조례에 대하여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2012. 6. 20. 회신 12-0188 의견제시 사례).²⁶⁸⁾

3. 본칙 및 부칙의 체제

가. 본칙과 부칙의 구성내용

본칙에는 ‘본칙’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칙에는 부칙의 맨 앞에 반드시 ‘부칙’이라고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율 내용은 당연히 본칙에 두어야 한다. 자치법규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자치법규와 새로운 자치법규의 법률관계

267) 그 밖에 특별법에 속하는 사안 중 가중처벌 등 특별한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특정한 사항이나 경우에 있어 잠정적 조치를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법」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268) 나아가, 안산시조례안 제2조에서 “안산시의 기본조례로서의 지위”를 규정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안산시의 다른 조례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라면, 안산시조례안이 안산시의 모든 개별 조례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개별 조례의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법제처 2017. 11. 17. 회신 17-0302 의견제시 사례).

간의 연결이나 조정 관계, 새로운 자치법규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기존 자치법규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대적(附帶的)인 사항은 부칙에서 정한다. 부칙과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칙이 있다. 보칙은 본칙 중에서 보충적 규정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대개 그 내용을 정하는 장이나 절의 표제로도 사용된다.

나. 본칙과 부칙의 장·절 구분 등

- 1) 자치법규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²⁶⁹⁾ 총칙·보칙·벌칙은 대개 그 용어를 그대로 장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 2) 장의 조문 수가 많으면 장의 조문들을 다시 절·관의 순서로 그 정도에 따라 좀 더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조문 수가 많으면 '장'의 상위 단위구분으로서 '편(編)'을 둘 수 있다.
- 3) 장·절 등의 구분은 본칙 규정에만 하고, 부칙에서는 하지 않는다.
- 4)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비록 조문 수가 적더라도 독립된 편·장·절·관을 두어 자치법규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상위법령이 있는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의 조문순서를 상위법령의 조문순서를 따라 배열하는 것이 전체 규율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상위법령에서 편·장·절 등을 구분하고 있으면 자치법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편·장·절 등을 구분해주는 것이 좋다.
- 5) 어떤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부분의 표제는 '총칙'으로 하고, 자치법규가 장, 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장, 절에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것의 표제는 '통칙'으로 한다.

269) 장은 총칙, 실체규정, 보칙, 벌칙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대개 장의 제목으로 '실체규정'이란 용어는 쓰지 않고, 그 규정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을 사용한다. 편, 장, 절, 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규정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 한다.

4. 자치법규 조항의 구성방법

가. 조·항·호·목의 사용

- 1) 자치법규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조례의 경우와 같이 자치법규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표시한다.
- 2)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이나 ‘호’로 구분한다.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하고,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²⁷⁰⁾ 다만, 호에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한다”와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항’은 ①·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한다.
- 3) ‘호’는 어떤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되, ‘호’로 열거하는 것보다 ‘조’나 ‘항’의 본문 또는 단서 부분에서 직접 열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호’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 4)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목’은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한다”와 같은 표현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목’은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한다.
- 5) ‘목’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 2), 3)…를 사용하고, 1), 2), 3)…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에는 가), 나), 다)…를 사용한다. 목 단위 이하 부분의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개정문 작성 시 목 이하의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개정문을 작성한다.

270) 정의규정에서는 ‘호’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란 ~~~~을 말한다.” 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한다.

예 시 ▶

제○조제○항제○호○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을/를 “△△”로 한다.
제○조제○항제○호○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
- 2) -----
- 3) -----

나. 조문의 제목 표시

자치법규의 조문에는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자치법규 내용을 검색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조’ 바로 다음에 연이어 괄호를 만들어 ‘제목’을 표시한다.

한 조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하여 제목을 정하고,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정하기 곤란하면 “(… 등)”이라고 표시하여 그 제목이 그 밖의 다른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자치법규 조문의 내용 표시

자치법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자치법규의 내용을 간명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기 위해 산식, 표 또는 그림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규정 내용이 기술적·전문적이거나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 별지 서식 등을 만들어 규정할 수도 있다.

5. 별표나 별지 서식의 사용 방법

별표 또는 별지 서식의 제목에서는 “[별표]”, “[별지 서식]”과 같이 “[]”를 붙여

표시하고, 자치법규의 조문에서 이를 인용할 때에는 “[]”를 쓰지 않고 “별표”, “별지 서식”과 같이 인용한다.

별표를 신설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일부개정 시 해당 부분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가급적 호, 목 등을 붙인다.

예 시 규정 내용을 세로로 열거하는 경우

1. -----
가. -----
1) -----
가) -----
(1) -----
(가) -----

예 시 규정 내용을 도표로써 가로로 열거하는 경우

업종	전문인력		
가. -----	1) -----	2) -----	
나. -----	1) -----	2) -----	
다. -----	1) -----	2) -----	

구 분	시설명	시설기준	고용인원
1. -----	1. -----	1. -----	1. -----
가. -----	가. -----	가. -----	가. -----
1) -----	1) -----	1) -----	1) -----
가) -----	가) -----	가) -----	가) -----
(1) -----	(1) -----	(1) -----	(1) -----
(가) -----	(가) -----	(가) -----	(가) -----
2. -----			

별표의 제목에는 밑줄을 긋고, 연이어 괄호 안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써준다.

예 시 ▶

[별표 1]

○○○ 시험과목(제○조 관련)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서식의 첨부서류란에는 상위법령이나 조례 또는 본칙의 해당 조항에서 첨부서류로 규정된 것만을 명시하고, 서식에서 새로운 첨부서류를 추가하여 정해서는 안 된다. 별표 또는 별지서식의 비고란, 첨부서류란의 번호표시는 1., 2., 3., 4. 등으로 한다.

별표 비고란에서 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호”로 표현하여 표의 내용을 인용함을 명확히 한다.

6.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

가. 편집용지의 규격 등

자치법규안은 한글을 기본 워드프로세서로 하는 법령안 입안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나. 편집용지의 기본 규격

- 1) 용지 크기: A4(210mm×297mm)
- 2) 용지 방향: 좁게
- 3) 용지 여백(F7)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16mm	16mm	25mm	25mm	12.7mm	12.7mm	0mm

다. 문단 모양(Alt+T)

1) 문단여백

문단여백(왼쪽·오른쪽·위쪽·아래쪽)은 모두 0.0pt로 한다.

2) 줄 간격

줄 간격은 230%를 기본으로 하되, 신·구조문대비표는 180%로 하고, 의결서 부분의 각 제목(의결주문·제안이유·주요내용·주요토의과제 및 참고사항)의 위, 자치법규의 제명 및 부칙의 위·아래, 편·장·절 제목의 위는 모두 460%로 한다.

3) 문단 정렬방식

자치법규 제명, 편·장·절의 제목, 부칙 제목 및 신·구조문대비표 제목은 가운데 정렬로 하고, 그 밖에 의결서 부분의 제목과 내용, 자치법규안의 공포번호 부분 및 내용 등은 양쪽 정렬로 한다.

4) 내어 쓰기 또는 들여 쓰기 기준

자치법규안의 경우는 조·항·호·목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내어 쓰기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마. 자치법규안 작성 예시와 같다. 가운데 정렬 방식인 경우에는 내어 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라.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Alt+L)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장평은 100%로, 자간은 0%로 설정한다.

글씨체 및 글씨크기	해당 부분
• 신명조, 14pt, 가는 글씨체	• 의결서 부분의 내용, 자치법규의 공포번호, 제정·개정 주문, 자치법규안 내용, 편·장·절의 제목, 개정지시문,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 부칙의 내용
• 신명조, 14pt, 진한 글씨체	• 부칙의 제목
• 신명조, 15pt, 진한 글씨체	• 표지의 내용(자치법규 제명 부분 제외), 의결서 부분의 제목
• 신명조, 16pt, 진한 글씨체	• 자치법규의 제명, 신·구조문대비표의 제목
• 신명조, 17pt, 진한 글씨체	• 표지의 자치법규 제명 부분

마. 자치법규안 작성 예시

조례_{vv}제_{vvvvvvvvv}호 (자치법규 종류 및 공포번호: 신명조 14pt)

Enter ↵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제명: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Enter ↵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주문: 신명조 14pt)

제7조 본문 중 “7일내”를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문: 신명조 14pt)

(이하 생략)

Enter ↵

부_{vvvvvvv}칙

(부칙: 가운데 정렬, 신명조 14pt, 진하게)

Enter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명조 14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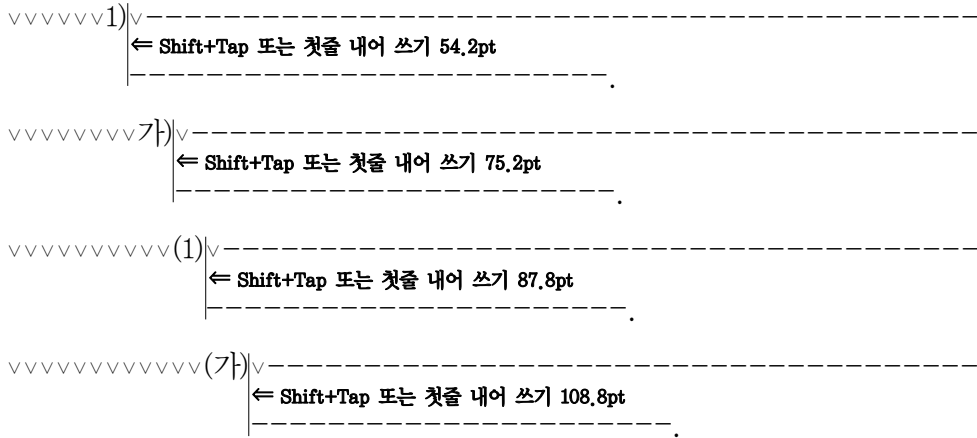
☆ 조·항·호·목 등의 내어 쓰기 기준

제○조(○○○○)①_v-----
← Shift+Tap 또는 칠판 내어 쓰기 14pt

_{vv}②_v-----
← Shift+Tap 또는 칠판 내어 쓰기 14pt

_{vv}1._v-----
← Shift+Tap 또는 칠판 내어 쓰기 24,4pt

_{vvvv}가._v-----
← Shift+Tap 또는 칠판 내어 쓰기 45,4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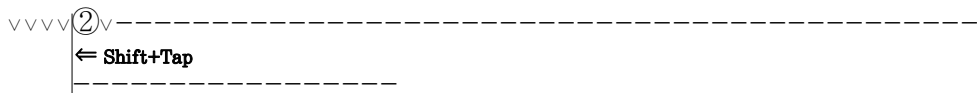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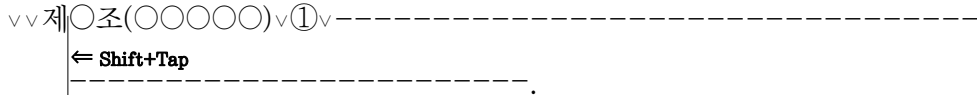


☆ 부칙에서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할 경우의 내어 쓰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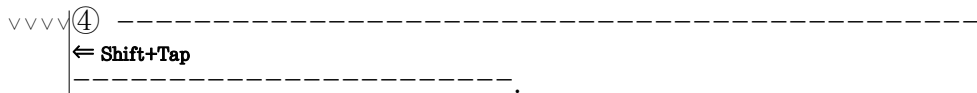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Shift+Tap
 v) 제○조를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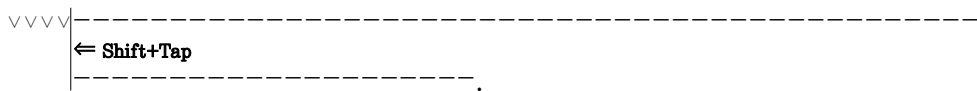
vv)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vv) 제○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vv) 제○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목: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현VVVVVVVVV행	개VVV정VVV안
제7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 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 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 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 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 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7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 ----- 14일 이내----- ----- ----- ----- ----- ----- ----- -----.

-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자치법규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제2장 | 자치법규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1. 개정 방식의 유형과 기준

가. 개정 방식의 기본 원칙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대상의 범위에 따라 자치법규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자치법규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다.

일부개정 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 자치법규와 새로운 개정 자치법규의 관계에서 개정 내용이 기존 자치법규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 방식(기존 자치법규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자치법규가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 내용이 기존 자치법규의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 개정 자치법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보방식(기존 자치법규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자치법규가 성립·시행된 후에도 기존 자치법규 중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 자치법규를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흡수개정 방식(부칙의 경우에는 증보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어느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양,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다.

■ 제3편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 2)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²⁷¹⁾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칙을 모두 검토하여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부칙은 모두 전부개정 한 자치법규의 부칙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 전부개정과 폐지·제정방식의 선택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으로는 전부개정 방식과 폐지·제정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 방식은 해당 자치법규의 전부를 개정하는 방식이고 폐지·제정 방식은 기존 자치법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면서 해당 자치법규의 부칙에서 기존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기존의 자치법규와 신 자치법규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제도 그 자체가 신규 양 자치법규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폐지·제정방식을 취한다.

271)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률의 전부개정으로 종전 법률의 부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례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법률이 전부개정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칙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5. 31. 결정 2009헌바123 결정례 참조).

2. 일부개정 방식

가. 일반적 유의사항

일부개정 자치법규의 내용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치법규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므로 일부개정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1) 자치법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개정되는 기존 자치법규의 용어와 체제를 따라야 한다.
- 2)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치법규의 적용 범위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개정을 하는 경우에도 자치법규의 제명을 바꿀 수 있다(예: 「출산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제명을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로 개정한 것).

나. 개정 자치법규의 유형 표시 및 제명

1) 유형 표시

자치법규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자치법규안은 먼저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유형 및 호수 표시(조례·규칙의 자치법규 유형을 적고 해당 자치법규의 개정절차가 끝나고 공포할 경우에 공포번호를 적을 수 있는 표시)를 한 후 그 다음 줄에 개정 자치법규의 제명을 적는다. 자치법규명을 자치법규의 본칙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 문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한다. 이는 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자치법규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자치법규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자치법규의 제명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 또는 “일부개정규칙안”이라고 쓴다.

예 시 ▶

- ❖ 조례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규칙
...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개정지시문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개정 자치법규안은 해당 자치법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을 붙여야 한다.²⁷²⁾ 일부개정 자치법규안의 개정지시문은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표현하며, 개정지시문을 기재한 후 줄을 바꾸어 조문별로 개정할 사항을 쓴다.²⁷³⁾

예 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272)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개정지시문”이라 하고,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를 “개정문”이라 한다.

273) 국가법령에서는 종전에 일부개정의 경우 “○○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전부개정의 경우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표현했으나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05. 1. 1.부터 일부개정은 “○○법(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전부개정은 “○○법(영)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라. 개정부분의 인용

1) 개정부분의 최소단위 지정

가) 최소단위 지정

개정되는 자구, 삭제되는 자구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가 자치법규 중 어느 대목인지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즉 조가 여러 개의 항·호 또는 목으로 되어 있거나 이것이 다시 전단, 후단, 본문, 단서 등으로 세분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 최소단위까지 인용한다. 또한 조문이 본문과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개정하려는 부분이 각 호가 아닌 본문에 있는 규정이면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과 단서 또는 전단과 후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까지 인용해야 한다.

예 시 ▶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을 “---”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을 “---”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로 한다.

나) 인용 시의 띄어쓰기

개정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조·항·호·목을 붙여 쓰고, 본문·단서, 전단·후단은 띄어 쓰며, “중”은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쓴다.

예 시 ▶

제5조제1항V본문V중 “---”을 “---”로 한다.
 제6조제1항V중 “---”을 “---”로 하고, 같은V조V제3항V중 “---”을 “---”로 한다.

2) 개정될 자구 인용기준

개정될 자구를 인용부호(“ ”)로 인용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용대상 자구는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명사(복합명사 포함) 단위로 한정한다.²⁷⁴⁾ 이 경우 자치법규의 조항(“제○조제○항”)은 하나의 명사로 보며, 그 조항이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이어서 그 앞에 “법”이나 “영”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영”도 함께 인용한다.

예 시 ▶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국토해양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300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재생”을 “재활용”으로 한다.(○)
“재생하는”을 “재활용하는”으로 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법(영) 제5조제1항”을 “법(영)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나) 구와 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앞뒤 구와 절 전체(십표를 포함한다)를 인용하여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구와 절 중 명사구만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사구만 인용하고 조사는 조사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거나 개정 대상이 아닌 동일 명사구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용하지 않는다.

274) 같은 항이나 같은 호에 개정내용과 같은 부분이 또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예 시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영업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영업자는 총리령”을 “영업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로 한다.(×)

- 다) 원칙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개정하되, 하나의 조·항·호 중 여러 곳을 개정·추가 또는 삭제하여 개정문이 매우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부를 개정한다.

3) 둘 이상의 항이 있는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 남아 있는 경우의 인용

제2항이 삭제되고 제1항만 남아 있는 조문의 개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제○조”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제○조제1항”으로 인용한다.²⁷⁵⁾

마. 개정문의 작성기준

1) 작성순서와 표현방식

- 가)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하나의 용어나 표현이 어느 자치법규 중에 자주 나오는 경우에도 조문 순서에 따라 일일이 개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자치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에서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칙의 끝 부분에서 일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정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일일이 각각의 조·항·호, 단서·전단·후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275) 2개 이상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다른 항을 모두 삭제하고 제1항만 남게 되는 조문의 경우, 남아 있는 제1항이 자동적으로 해당 조의 본문이 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해당 조항을 인용할 경우 제○조 제1항으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로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행 법령집에 제2항이 삭제된 경우에도 형식상 제1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에 따라 많은 국민이 그 조문을 인식할 때 현행법령집을 바탕으로 제○조제1항이라고 읽고 인용하므로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인용하기로 했다.

예 시 ▶

제○조제3항, 제○조제3항 단서 및 제○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나) 개정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1) 기존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조 중 “A”를(을) “B”(으)로 한다”라고 표현한다.
- (2) 조·항·호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조(제○조제○항,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표현하고, “제○조를 삽입한다” 또는 “제○조를 추가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3)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조(제○조제○항, 제○조제○항제○호)를 삭제한다”라고 표현한다.

다) 기존의 조·항·호의 문구 중 약간의 자구를 추가·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제○조(제○항제○호) 중 “---” 다음에 “---”을 추가(삽입)한다.” 또는 “제○조(제○항제○호) 중 “---”을 삭제한다.”고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개정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 (제○항제○호) 중 “---”를 “---”로 한다.”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예 시 ▶

예: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다음에 “· 부산광역시”를 삽입한다. (×)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로 한다. (○)

예: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다음의 “· 부산광역시”를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

라) 장·절로 구분된 법령에서 조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항에 단서·후단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장에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여 신설하는 조·항·호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야 한다.

2) 개정문의 조 단위 작성원칙

가) 개정문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여러 개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문장으로 너무 길게 작성하면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거꾸로 간단한 개정사항을 너무 세분하여 여러 개의 개정문으로 작성하면 번거롭게 된다. 따라서 개정문은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끊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시 276)

제3조 중 “----”을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
 제5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한다.

3) 개정문의 조 단위 작성 예외

가) 연속되는 다수 조문이나 인접한 여러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조문마다 개정문을 둘 필요 없이 하나의 개정문으로 한다.

예 시 연속되는 여러 조문의 경우(예: 제3조, 제4조, 제5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제4조() -----.
 제5조() -----.

276) 예시의 경우 “제3조 중 “---”을 “---”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한다.”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 작성하게 되면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개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예 시 ▶ 연속되지 않은 여러 조문의 경우(예: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 -----.
- 제5조() -----.
- 제7조() -----.

나) 한 조문에 여러 개의 항·호가 있고 이들의 개정사항이 많거나 항·호의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이 동시에 필요한 것과 같이 개정문이 복잡해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조라도 적절히 나누어 여러 개의 개정문으로 한다. 별표의 개정문도 마찬가지이다.

예 시 ▶

제3조의 제목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

제3조제3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을 “---”로 한다.

4) 개정문의 연결

하나의 개정문에 여러 개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각 개정사항마다 “—하고, —하며, —하고, —하며”로 연결하고, 맨 끝은 “—로 한다.”로 하여 문장을 마친다. 다만, 하나의 법령문장에 개정사항이 둘 이상 있으면 그 개정부분은 “—로, —로”와 같이 연결한다.

예 시 ▶

제3조제1항 본문 중 “---”을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A”를 “B”로, “C”를 “D”로, “E”를 “F”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한다.

바. 제명 및 조·항·호의 개정방식

1) 제명의 개정

자치법규의 제명을 개정할 때에는 제명 전체를 전부 개정한다. 제명의 개정부분은 개정자치법규안의 개정지시문 바로 다음 즉 개정부분의 맨 처음에 두어야 한다.

예시

제명 “-----”을 “-----”로 한다.

2) 조·항·호 등의 일부개정 방식

가)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괄호를 포함해 제목 전체를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목이 긴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개정할 수도 있다.

예시

제○조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조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나)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방식

(1) 개정할 부분이 하나인 경우

예시

제○조(제○항제○호) 중 “----”을 “----”로 한다.²⁷⁷⁾

277) 제○조에 항이 없는 경우 ‘제○조 중 “~~~”을 “~~~”로 한다.’와 같이 개정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개정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조 제목에 있는 경우라면 조 제목의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제○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을 “~~~”로 한다.’라고 해야 한다.

(2) 개정할 부분이 둘 이상인 경우

같은 조, 항이나 호에 개정할 부분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을 “---”로, “---”을 “---”로와 같이 연결하여 개정한다. 같은 조·항 또는 호의 경우에도 개정부분이 본문과 단서 또는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적시하여 개정한다.

예 시 ▶

제○조(제○항제○호) 중 “----”을 “----”로, “----”을 “----”로 한다.
제○조 본문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을 “---”로 한다.

(3) 항·호를 달리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같은 조에서 항 또는 호가 다른 둘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에 제○조제○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와 같이 연결하여 개정한다.

예 시 ▶

제○조제○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 한다.

(4) 하나의 조 안에서 같은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하나의 조 안에서 같은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을 각각 “---”로 한다
방식으로 하며, 이때 반드시 “각각”을 표시해야 한다.²⁷⁸⁾

278) 여러 조문을 계속해서 열거할 때, 같은 수준의 조·항·호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호)”를 쓰지 않고 바로 연결하고, 다른 수준의 조·항·호는 위 수준의 “같은 조(항·호)”를 쓴 후 연결한다. 다만, 본문, 단서, 각 호 외의 부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수준일지라도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같은 조(항·호)”를 쓴다.

예)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를 각각 “~~~”로 한다.(같은 수준)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를 각각 “~~~”로 한다.(다른 수준)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를 각각 “~~~”로 같다.(다른 수준)

이 때 ‘같은 수준’의 기준은 단순히 ‘항’과 ‘항’, ‘호’와 ‘호’ 또는 ‘목’과 ‘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아래에서 ‘항’과 ‘항’, 같은 항 아래에서 ‘호’와 ‘호’, 같은 호 아래에서 ‘목’과 ‘목’을 말한다.

예 시 ▶

제○조제○항 및 제○항 중 “-----”을 각각 “-----”로 한다.

(5) 조(항)에 각 호가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 부분이 각 호 외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여 개정한다.

예 시 ▶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을 “-----”로 한다.

(6)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개정 부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예 시 ▶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로 한다.

3) 조·항·호 등의 신설 방식

가) 항이 없는 조에서 제2항 이하를 신설하는 방식

(1) 현행 조문을 개정하지 않고 항 등을 신설하는 경우²⁷⁹⁾

예 시 ▶

제○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279) 본문만 있는 조에 항을 신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제○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여 동조의 본문이 제1항이 됨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제1항이 되는 것으로 했으나 국민의 이해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와 같이 본문이 제1항이 됨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2) 현행조문의 일부분을 개정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는 경우

예 시 ▶

제○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나) 각 호가 없는 조·항에 각 호를 신설하는 방식²⁸⁰⁾

예 시 ▶

제○조(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다)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는 방식

예 시 ▶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예 시 ▶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단서나 후단을 신설하려는 조 또는 항이 각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제○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또는 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이 경우) -----

280) 이 경우 전부개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라) 기존의 조·항·호의 맨 끝부분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5개의 조·항 또는 호가 있는 자치법규를 예로 함)

예 시 ▶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

예 시 ▶ 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

예 시 ▶ 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마)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1) 개정방식

기존의 조·항 또는 호 사이에 새로운 조·항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에는 기존 조·항·호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현행 조항의 이동방식)과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기존 조 또는 호를 이동시키지 않고 새로운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가지번호 방식)이 있다.

(2) 현행조항의 이동방식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조·항·호를 삽입하여 추가한다. 다만, 추가될 위치 앞의 조·항·호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역으로 조·항·호를 끌어올려 빈자리를 만들 수 있다.

자치법규의 조·항·호는 해당 자치법규는 물론 다른 자치법규에서 자주 인용되므로 이를 이동할 때에 신중해야 하며 인용하는 관계 자치법규의 정비조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의 수가 너무 많거나,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을 그 자치법규 중의 다른 조문이나 다른 자치법규 중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서술하는 ‘가지번호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시 ● 기존의 항(호)을 끌어내리고 항(호)을 추가하는 경우

[세 개 항 또는 세 개 호로 된 조에 두 개 항(호)을 추가하는 경우의 예]

제○조제3항(호)을 제5항(호)으로 하고, 같은 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호의 경우: 3. -----)

④ -----(호의 경우: 4. -----)

예 시 ● 여섯 개 항으로 된 자치법규에 두 개 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2항 다음에 하나의 항을, 제5항 다음에 하나의 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예]

제○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⑦ -----.

(3) 가지번호 방식

가지번호 방식은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 조나 호를 신설하는 경우에 새로운 조나 호가 신설되어 그 뒤의 조나 호가 하나씩 순서가 밀리면서 이를 모두 개정해야 할 경우, 신설하는 조나 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신설되는 조나 호보다 다음에 있는 조나 호의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개정방식이다.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개정부분이 많아지고 복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간혹 이를 빠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지번호방식에 따라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²⁸¹⁾

예 시 ▶ 기존의 제○조 다음에 두 개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
 제○조의3(○○) -----

예 시 ▶ 기존의 제○호 다음에 두 개 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항)에 제○호의2 및 제○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2. -----
 ○의3. -----

예 시 ▶ 제3조(호) 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3조(호)를 제3조(호)의2로 하고, 제3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

가지번호는 조와 호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항과 목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새로운 항이나 목을 신설하려면 현행 조항의 이동방식을 취해야 한다.

(4) 추가되는 조가 장·절 등의 경계에 들어가는 경우의 개정방식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들어갈 장·절을 표시한다.

예 시 ▶

제○장(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²⁸²⁾
 제10조의2(○○) -----

281) 10개의 조로 된 자치법규에 제3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3조를 신설하여 기존의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1조로 개정해야 하고 만약 조문의 내용에 제3조나 그 후의 조를 인용하는 경우에 이를 개정된 조번호로 일일이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지번호 방식을 사용하여 조를 신설하면 기존의 조문은 그 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4) 조·항·호 등의 전부개정방식

예 시 ▶ 조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예 시 ▶ 항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예 시 ▶ 호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예 시 ▶ 전부개정되는 항·호의 수가 많을 경우

제○조제2항(제2호)부터 제5항(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호의 경우: 2. -----)

③ ----- (호의 경우: 3. -----)

④ ----- (호의 경우: 4. -----)

⑤ ----- (호의 경우: 5. -----)

예 시 ▶ 조·항 중의 본문, 단서, 전단, 후단, 각 호, 각 호 외의 부분을 전부개정하는 경우²⁸³⁾

제○조제○항 본문(단서·전단·후단·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2) 장이나 절의 경계에 신설할 때에 “제○장(절)”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앞 장(절)의 마지막에 신설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283) 단서를 후단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

5) 조·항·호 등의 삭제방식

예 시 ▶ 조(항·호)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제○조(제○항, 제○호)를 폐지한다.(×)

예 시 ▶ 조(항·호)의 단서·후단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항·호)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예 시 ▶ 삭제하는 조·항·호의 수가 많을 경우

제○조부터 제○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조제2항(호)부터 제5항(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예 시 ▶ 삭제된 조가 있는 경우(제5조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예 시 ▶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²⁸⁴⁾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6) 조·항·호의 복합적 개정방식

가) 어느 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

어느 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눈다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조를 전문개정하고 두 개의 조를 신설하는 형식으로 한다.

284) 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2조와 제6조 사이에 제5조의2가 있으면 가지번호인 제5조의2를 명시해야 한다. 가지조문을 인용하거나 준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 시 ▶ 제2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

제2조의3(○○) -----.

나)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예 시 ▶

제5조 중 “---”을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위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 전의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시 ▶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6조(중전의 제5조) 중 “---”을 “---”로 한다.

다) 두 개 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 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 시 ▶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을 “-----”로 한다.

② -----.

라) 개정문이 복잡한 경우

세 개 이상의 항으로 된 조의 각 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제1항과 제2항의 항 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와 같이 개정문이 복잡할 때에는, 개정문을 적절히 끊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 시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을 “----”로 한다.

③ -----.

위 개정문의 제3항 이하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예 시

제○조제3항 중 “----”을 “----”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마) 두 개 항으로 된 조에서 제2항을 전부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운 제2항과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 시

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③ -----.

④ -----.

바) 두 개 항으로 된 조에서 하나의 항을 삭제해 하나의 항만 남게 되는 경우

예 시 ▶

(제○조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항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한다.

두 개 이상의 항으로 된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을 남기고 다른 항은 모두 삭제하는 경우 남는 항을 특별히 같은 조의 본문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항이 있다가 하나의 항만이 남게 되어 항 번호를 붙이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다른 자치법규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 전체를 전부개정하여 항 표시 없는 본문으로 바꾸되, 해당 조문을 다른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사) 제○조가 다섯 개 호로 되어 있을 때 제3호를 전부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 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예 시 ▶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위의 경우에 제3호의 개정내용과 나머지 부분의 개정내용을 나누어 두 개의 개정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예 시 ▶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제○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아) 어느 조(항)의 각 호를 전부개정하면서 각 호의 수가 변경된 경우

예 시 ▶ 각 호의 수를 줄이는 경우(다섯 개 호를 세 개 호로 하는 경우)

제○조(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예 시 ▶ 각 호의 수를 추가하는 경우(세 개 호를 네 개 호로 하는 경우)

제○조(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4. -----

다만, 이 경우에 ‘제○조제○호부터 제○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호 및 제○호를 각각 신설(삭제)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문을 만들 수도 있다.

자) 조(항)의 중간에 있는 어느 항(호)을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면 다음의 방식을 사용한다.

예 시 ▶ 하나의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예 시 ▶ 둘 이상의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7) 특수한 개정방식

가) 조로 되어 있지 않은 법령에 조를 추가하는 개정방식²⁸⁵⁾

예 시 ▶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

나) 조·항·호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예 시 ▶ 조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7조로 한다.

예 시 ▶ 같은 조 안에서 항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예 시 ▶ 같은 항 안에서 호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같은 항 제5호 및 제1호로 한다.

예 시 ▶ 별지나 서식을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4 및 별표 1로 한다.

285) 조로 되어 있지 않은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칙 중 “----”를 “----”로 한다.”와 같이 개정문을 만든다.

사.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1)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장이나 절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목 전체를 전부개정하되, 제목이 긴 경우 자구 일부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개정한다.

예 시

제○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장(절)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2) 장·절 등을 추가하는 방식

장이나 절 등을 추가할 때에는 해당 장이나 절에 신설되는 조항을 알 수 있도록 장 또는 절 다음에 “(제○조부터 제○조까지)”를 포함하여 개정문을 작성한다.

예 시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 ○
제○조 -----
제○조 -----
제○조 -----

3) 장·절 등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예 시

제6장(제50조부터 제5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 ○ ○
제50조 -----
⋮
제58조 -----

4) 장·절 등을 삭제하는 개정방식

장 또는 절 등을 삭제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해당 장이 몇 조부터 몇 조까지 해당하는지를 병기해야 한다.

예 시 ▶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삭제한다.

5) 기존의 조문에는 변동 없이 장·절의 제목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

가) 장·절의 제목을 추가하는 경우²⁸⁶⁾

예 시 ▶

제○조 다음에(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나) 장·절의 제목을 삭제하는 경우

예 시 ▶

제○조 다음의(앞의) “제○장 ○○○”을 삭제한다.

아. 부칙 개정방식

1) 기존 자치법규의 부칙 개정

자치법규의 제정·전부개정 또는 그 이후에 일부개정된 자치법규의 부칙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예를 들어 해당 자치법규의 유효기간이나 경과 조치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86) 이런 경우 종전에는 ‘제○조 다음에(앞에) “제○장 ○○○”을 삽입한다.’라고 표현하였으나, 일반적인 개정문의 표현방법과 달라 장 번호 및 제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 개정방식

- 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한다.
- 나) 개정문에서는 개정대상이 되는 조항 앞에 “부칙”이라는 자구를 붙이고, 일부개정 자치법규의 부칙에는 공포번호와 해당 개정 자치법규의 제명을 병기한다.
- 다) 자치법규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²⁸⁷⁾

예 시

‘조례 제○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조례 제○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3) 두 개 조로 된 부칙(또는 본칙) 중 제2조를 삭제하는 개정방식²⁸⁸⁾

예 시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4) 부칙과 별표(또는 별지 서식)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

이 경우에는 별표(또는 별지 서식), 부칙의 순서로 개정문을 쓴다.

예 시

별표(또는 별지 서식) 중 “---”을 “---”로 한다.
 조례 제○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별표(또는 별지 서식)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개정문은 아래와 같이 하되, 개정내용은 별표의 개정문, 부칙 개정문, 별표의 개정내용의 순으로 한다.

287) 종전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한다.

288) 종전에는 “부칙 제1조의 조명 및 제목과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고 하여 조문의 조명(“제1조”를 말함)과 제목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번잡해지고 기존 조문은 연혁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하지 않는다.

예 시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별지에 별표의 개정 내용 수록)

5) 기존 자치법규의 부칙을 재개정하는 방식

개정된 기존 자치법규의 부칙을 다시 개정하려는 경우(같은 부칙을 두 번 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정대상 부칙조문을 좀 더 정확히 특정하는 다음의 형식에 따른다.

예 시 ▶ 국가법령에서 기존 부칙을 개정한 사례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74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조제3항 중 “1998년 6월 30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자. 표와 서식의 개정방식

1) 일반적 유의사항

- 가) 별표를 개정하는 개정문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거나 별표의 제목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 나) 별표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별지와 같이 한다”²⁸⁹⁾로, 별표를 일부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할 때에는 개정문의 본칙부분에 개정부분을 적고,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할 때에는 개정문의 부칙 부분 다음의 별장에 개정부분을 적는다.

289) 조례를 일괄개정조례안(복수의 조례를 하나의 개정조례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방식)의 형태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하지 않고 별지에 번호를 붙여 “별지 0과 같이 한다”라고 표현한다.

- 다) 별표를 신설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일부개정 시 해당 부분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가급적 호, 목 등을 붙인다.
- 라) 별표의 제목 중 일부를 개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별표의 제목 중 “~~~”를 “~~~”로 한다.
- 마) 별표에 있는 호를 개정할 때에는 “별표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표의 난 중에 있는 호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란의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 바) 부칙 규정사항의 별표규정
부칙 규정 사항(특히 특례규정) 중 그 내용을 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해에 편리한 경우에는 해당 부칙에서 표 형식으로 규정하고, 별표형식으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본칙 관련 별표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성격을 띠면 예외적으로 별표형식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관련 별표의 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본칙 관련 별표 다음에 가지번호형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별표의 일부개정방식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별표 1 및 별표 2를 예로 함)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구청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가) 대구청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예 시 ▶

별표 1 중 대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 구 청	-----	-----
-------	-------	-------

나) 대구청란의 일부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예 시 ▶

별표 1 중 대구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대구청란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

예 시 ▶

별표 1의 대구청의 위치(또는 관할구역)란 중 “~~~”을 “~~~”로 한다.

라)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추가하는 개정방식

예 시 ▶

별표 1의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산 청	-----	-----
-------	-------	-------

마) 대구청란을 삭제하는 개정방식

예 시 ▶

별표 1 중 대구청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 나.
- 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조제○항	50	100	150
나.	법 제△조제△항	100	150	200
다.	법 제□조제□항	150	200	250

가) 나목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예 시 ▶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조제△항	110	160	210
----	----------	-----	-----	-----

나) 나목란의 일부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예 시 ▶

별표 2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조제▽항

다) 나목란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

예 시 ▶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을 “~~~”로 한다.

■ 제3편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라) 제2호에 목을 신설하는 방식

예 시 ▶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조제△항	110	160	210
----	----------	-----	-----	-----

마) 제2호나목을 삭제하는 개정 방식

예 시 ▶

별표 2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3) 별표의 전부개정 방식

예 시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4) 별표를 별표 둘로 하는 개정방식

예시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별표 2]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5) 별표 둘을 별표 하나로 통합하는 개정방식

예시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6) 서식의 개정방식

가) 서식을 개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이 괄호 []를 사용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한다. 서식을 일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앞쪽 또는 뒤쪽임을 특정해야 한다.

예)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5일”을 “즉시”로 하고, 같은 쪽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나) 서식의 추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기존의 서식과 추가되는 서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1) 내용이 다른 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할 경우

예 시 ▶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 내용이 같은 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할 경우

예 시 ▶

별지 제3호서식(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 제정자치법규안의 형식

예 시

조례 제○호	
	○○○조례안
제1조(○○)	-----.
제2조(○○)	-----.
	부 칙
	-----.

제정 자치법규안은 전부개정자치법규안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개정자치법규의 제명을 붙이지 않고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개정 지시문에 대체되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는 표현도 하지 않으며, 바로 제정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쓴 다음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쓴다.

4. 폐지 방식

가. 폐지방식의 유형

어느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식과 폐지를 위한 자치법규를 따로 제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방식은 어느 자치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결과로서 기존의 자치법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취하고, 후자의 방식은 다른 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는 관계없이 어느 자치법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취한다.

나. 폐지방식의 유형에 따른 규정례

1)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부칙 중 시행일에 관한 조 다음에 조를 두어 폐지한다.

예 시 ▶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는 폐지한다.

폐지 자치법규의 호수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용되는 자치법규의 호수는 폐지되는 자치법규의 제정호수(해당 자치법규가 전부개정된 적이 있으면 그 전부개정된 호수)를 표시한다.

예 시 ▶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호 ○○조례는 폐지한다.

2) 폐지 자치법규의 형식

“○○조례(규칙) 폐지조례안(폐지규칙안)”이란 명칭을 붙이고 본칙으로 해당 자치법규를 폐지한다는 폐지문을 쓰고 부칙에 관한 사항을 쓴다.

예 시 ▶

조례 제○호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

폐지 자치법규의 호수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용되는 자치법규의 호수는 폐지되는 자치법규의 제정호수(해당 자치법규가 전부개정된 적이 있으면 그 전부개정된 호수)를 표시한다.

예 시

조례 제○호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제○호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5.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

가. 필요성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개정 자치법규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위탁대상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탁대상 사무를 추가하거나, 시장이 주민에게 새로운 내용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장의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위임조례를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각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면 조례 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한다.

나. 개정방식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조례를 개정하면서 A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B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방식과 ②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조례와 B조례를 같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드는 방식).

다. 자치법규 제명

- 1) A라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B라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자치법규 제명에 B자치법규의 개정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요컨대 부칙에서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자치법규의 제명은 부칙에서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않는 자치법규와 같다.
- 2) A라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폐할 즈음에 B, C라는 여러 관계 자치법규 규정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들의 원인을 일으킨 자치법규의 부칙에서 개정하기에는 개정 내용이 중요하여 부적당할 때나 여러 자치법규가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필요성 면에서 인과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에는 따로 자치법규의 제정 형식을 취하여 그 본칙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명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적절히 붙이도록 한다.

예 시

“~을 위한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라. 개정문 표현방법

- 가)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과 같은 조 제목을 붙이고, 개정되는 조례가 다수인 경우에는 조례별로 각각 항을 나누어 개정문을 작성한다.

예 시 ▶ 부칙에서 하나의 자치법규를 개정한 사례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을 “-----”로 한다.

예 시 ▶ 부칙에서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한 사례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을 “-----”로 한다.
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을 “-----”로 한다.

나) 본칙으로 복수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개정 대상 자치법규별로 조를 두고 각 조마다 “(○○조례의 개정)”과 같이 조 제목을 붙이고 개정문을 작성한다.

예 시 ▶ 본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한 사례: 일괄개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A조례」의 개정) A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2조(「B조례」의 개정) B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생략)

제3조(「C조례」의 개정) C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4조 이하 생략

마. 개정한계

1) 개정 자치법규 간의 관련성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을 하나의 일부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개정하려는 둘 이상의 자치법규 간에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가) 부칙 개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

부칙으로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하는 정도의 개정에만 한정된다(제2편 제3장 7.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참조).

나) 본칙 개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로서,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시행일이 같거나 서로 가까울 것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을 것
- ②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개정 자치법규 간의 동질성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없다(예컨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이나 훈령 등을 묶어서 개정할 수 없다).

Q&A | 질의·답변

Q1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한 경우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던 기존 조례 부칙 규정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

A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하면 구 자치법규에 있던 제명부터 부칙까지 모든 내용이 신 자치법규 내용으로 대체되므로 폐지·제정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구 자치법규에 있던 종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도 실효되므로 전부개정 이후에도 종전 자치법규에 있던 유효기간을 계속 적용하려면 반드시 전부개정안 부칙에 별도로 유효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 판례(2017두74320 등)는 전부개정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전 부칙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자치법규를 전부개정 할 때는 종전 부칙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함.²⁹⁰⁾

Q2 기존 조례의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된 조항을 “삭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한지, 삭제된 조항을 없애고 삭제된 조항의 자리에 삭제되지 않는 기존 조항을 이동하는 것이 타당한지?

A 우리나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방식은 흡수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바, 자치법규의 조문에서도 개정연혁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조항 번호가 달라지면 일부개정조례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부분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등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개정 연혁을 나타낼 필요성 및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연혁이 드러나도록 삭제된 조항을 삭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조항에서 삭제되는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가 없고, 개정연혁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삭제된 조항 자리에 삭제되지 않는 기존 조항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29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례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례 참조

제3장 | 용어와 표현

법령 용어와 표현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따른다.

1. 용어 사용 기준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법령문에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와 달리, 형식성이 중시되고 일반적·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가치 개념을 지니고 있어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 법령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들어온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곳곳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통신·금융·환경·농림 등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늘어나고 외국어·외래어·신조어 등이 사용되면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며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표현 또한 쉽고, 뚜렷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법령 용어가 어려운지, 알기 쉽게 쓸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기 쉽게 쓸 것인지도 국민과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실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는 고유어나 쉬운 말로 순화하여 규정해야 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²⁹¹⁾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라도 권위적·비민주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용어는 적절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291) 외래어·외국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법제처와 국립국어원 등 전문 기관에 자문한 후 사용한다.

아래에서는 법령문을 작성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전문용어, 외국어·외래어·신조어 등을 알기 쉽게 쓰는 방법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의 정비

가. 어려운 한자어

1) 쉬운 말로 고치기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려운 한자어는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고쳐 쓴다. 다만,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쓰면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쉬운 한자어라도 같은 뜻으로 더 널리 쓰이는 쉬운 고유어가 있으면 고유어로 바꾼다.

적용사례 ▶

□ 경유하다 → 거치다

‘경유하다’는 ‘거치다’로 쓴다. 다만, 명사형으로 쓸 경우에는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다.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 상당(相當)한 → 타당한, 해당하는, 적절한, 많은,

해당 조문의 ‘상당한’은 문맥에 맞게 ‘타당한’, ‘해당하는’, ‘적절한’ 등으로 바꾸어 쓴다.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내지(乃至) → ~부터 ~까지

내지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여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과 ‘혹은/또는’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말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쓴다.

국가정보원의 1급 내지 4급 직원
→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 부적합하다 → 적합하지 않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소

2) 축약어 풀어 쓰기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축약어(縮約語: 줄여 쓴 말)는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줄이지 않은 온전한 말로 풀어 쓴다.

□ 폐치·분합 → 폐지·설치·분할·통합, 폐지·설치·분리·합병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 연구

□ 개폐 → ~개정 또는 폐지, 개편 또는 폐지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 교육 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3) 문맥에 따라 고쳐 쓰기

같은 용어라도 해당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이 경우에도 명사나 명사형은 우리말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고 한자어를 그대로 쓴다.

- 가중하거나 경감하다 → (기간을,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다
 -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다
 - (세금을) 감면하다

입법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교부하다 → 내주다, 주다, 지급하다, 발급하다, 교부하다
문맥에 따라 금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다’로, 등록증, 인증서, 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발급하다’로 바꿀 수 있다.

(돈)을 교부하다 → 지급하다, 내주다, 주다
(증명서)를 교부하다 → 발급하다, 내주다, 주다

4) 설명 붙이기

적절한 우리말 순화 용어를 찾기 어려운 한자어는 그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 후 쌍점(:)을 찍고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쓴다. 이 방법은 입법 기술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적용사례 ▶

소택지(沼澤地) →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독림가(篤林家) →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5) 한자를 같이 쓰기

한자 병기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문맥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동음이의어가 있는 등의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한다. 한자 병기는 그 용어가 법령에서 맨 처음 나오는 곳에 한 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글은 같으나 한자가 다른 용어는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병기할 수 있다.

고유어가 원래 용어의 법적 의미를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를 함께 쓴다.

□ 실화 → 실화(失火)

입법례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가 → 고가(高架)

입법례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바꿀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바꾸기

같은 말이라도 고유어와 한자어가 각각 널리 쓰이고 있는 경우 되도록 쉬운 고유어를 쓴다. 다만, 한자어가 다른 말과 어울려 복합명사처럼 굳어져 쓰이는 경우에는 한자어를 그대로 쓴다.

□ 연령 → (홀로 쓸 때) 나이
→ (복합명사처럼 쓸 때) 연령

수급연령 → 수급연령(○), 수급나이(×)

□ 저감하다 → 줄이다

‘저감하다’는 ‘줄이다’, ‘낮추다’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다만, ‘저감대책’, ‘저감시설’ 등과 같이 하나의 의미단위로 쓰일 때에는 무리해서 순화하지 않고 ‘저감’을 그대로 쓴다.

오염부하량을 저감하는 →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7) 한문 투 표현 고치기

법령문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여부(與否)’와 ‘유무(有無)’는 우리말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므로, ‘여부’나 ‘유무’가 없으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와 같이 꼭 필요할 때에만 ‘여부’나 ‘유무’를 쓴다.

적용사례 ▶

사용하는지 여부를 → 사용하는지를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하는지

8) 한자어의 본뜻대로 바르게 쓰기

한자어의 뜻을 잘못 사용한 것은 바로잡는다. 우리말의 단어를 구성하는 규칙에 어긋난 어색한 말을 쓰지 않는다.

적용사례 ▶

자문을 구하다 → 자문하다, 조언을 구하다

9)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쓴다.

적용사례 ▶

멸실하다 → 멸실하다(○), 없어지다(×)
 현저한 → 현저한(○), 매우 큰(×), 뚜렷한(×)
 양도하다 → 양도하다(○), 양도(讓渡)하다(○), 넘겨주다(×), 넘기다(×)
 양수하다 → 양수하다(○), 양수(讓受)하다(○), 넘겨받다(×)

나.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일본식 한자어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법령에는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가 곳곳에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식 한자어가 우리말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는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적용사례 ▶

□ 감안(勘案)하다 → 고려하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한다.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다.

■ 제3편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 부의(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회의에 올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자(者) → 사람, 자

‘자’가 ‘사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쓰고,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의미할 때에는 ‘자’를 그대로 쓴다.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 명하다 → 처분을 하다

‘명하다’를 ‘처분을 하다’와 같이 명확하게 다른 말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친다. ‘명령하다’는 어감이 너무 강하므로 ‘명하다’를 ‘명령하다’로는 고치지 않는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 일본어투 표현

1) ~에 → ~과, ~로, ~보다, ~를, ~에게, ~에서, ~로서

법령문에서 조사 ‘에’는 일본어 조사 ‘に’를 직역한 경우가 많다. ‘に’에 대응되는 우리말 조사는 ‘~에’를 중심으로 하여, ‘~과, ~로, ~보다, ~를, ~에게, ~에서, ~로서’ 등 다양하므로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우리말 조사를 쓴다.

적용사례 ▶

보험에 관계있는 → 보험과 관계있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 기산일로 소급하여
시기에 소급하여 → 시기로 소급하여

결원 수에 부족하고 → 결원보다 적고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의 → ~이, ~가, ~을, ~를, ~인, 생략

법령에는 일본어 조사 ‘の’를 직역하여 ‘의’를 어색하게 쓴 경우가 많은데, ‘의’를 생략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는 조사를 쓴다.

가) 주격 조사 ‘이/가’의 사용

주어의 위치에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주격 조사인 ‘이, 가’를 사용한다.

적용사례 ▶

□ ~의 → ~이, ~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 →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나) 목적격 조사 ‘을/를’의 사용

목적어의 위치에는 목적격 조사 ‘~을, ~를’을 쓴다.

적용사례 ▶

□ ~의 → ~을, ~를

급여의 지급을 위해 →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 ‘~의’를 반복해서 써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다른 조사를 적절하게 쓴다.

임대주택의 건설에	→ 임대주택	✓ 건설에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품위	→ 수사	✓ 주재자로서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변제	✓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3) 그 밖의 일본어투 표현

‘~에 관하여’, ‘~하는 한’ 등도 일본어를 직역한 어투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적용사례 ▶

□ ~에 관하여 → ~에, ~는, ~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가 없는 한 → ~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한 번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 전문용어

전문용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말한다. 전문용어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등이 많은데, 관련 종사자들에게 익숙한 말이라든가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말이므로 법령문에서는 쉬운 말로 고쳐 써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용어라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용어라면 법령 등 공문서에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고쳐 써야 한다.

적용사례 ▶

제세동기(除細動機)	→ (자동) 심장충격기
삽수(插穗) 또는 접수(接穗)	→ 꺾꽂이순 또는 접순
드레싱(dressing)	→ 소독

마. 외국어·외래어·신조어

외국어·외래어, 신조어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법령에도 많이 규정되고 있다. 물론 과학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여 미처 우리말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 또 우리말이 있더라도 외국어 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어나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조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외국어·외래어를 법령에 사용할 때에는 먼저 고유어나 어문 규범에 맞는 쉬운 말로 고쳐 쓸 수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경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괄호 안에 외국어 등을 적어 줄 수 있으며, 바꾸어 쓸 우리말이 전혀 없거나 이미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적용사례 ▶

가이드라인	→ 지침
인프라	→ 기반시설
바우처	→ 복지 이용권
로컬푸드	→ 지역농산물
교육프로그램	→ 교육과정

Q&A | 질의·답변

Q 자치법규에 외국어나 외래어를 쓸 수 있는지?

A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서는 조례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서는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따라서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할 것임.

바. 차별적·권위적 용어

특정 집단이나 계층,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용어는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성차별적인 용어, 특정 직업에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하는 용어, 장애인을 비하(卑下)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는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적용사례 ▶

자(子)	→ 자녀
강사료	→ 강의료
혼혈아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 법령 용어의 통일적 사용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 “간주한다”, “본다”, “추정한다”

일본식 한자어 “간주한다”는 “본다”로 순화해서 쓴다.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는 않은 경우라도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 “본다”고 규정되면 입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반대증거가 제시된다고 해서 법령의 규정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리라고 입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하면 추정의 효력은 그 증거에 따라 더는 유지되지 못한다.

❖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을 때 쓰며,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을 때 쓴다.

❖ **“이전”과 “이후”, “전”과 “후”**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 **“즉시”와 “지체 없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 **“협의”, “합의”, “승인”, “동의”**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사를 구할 때에 쓰이고,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에 쓴다. “승인”은 주로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의사를 구할 때에 쓰고, “동의”는 상대방에게 찬반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쓴다.

대체로 대등한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상호 간에 의사의 완전한 합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쪽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입안 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기일”, “기한”, “기간”**

“기일”은 어떤 행위가 행해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변론기일·공판기일 등)를 말하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나 소멸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말로 시간적인 간격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허가기간’, ‘면허기간’ 같이 어떠한 행위가 행해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으로 쓰고,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으로 쓴다. 또한 그 기간을 늘리거나 기한을 늦추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에는 ‘연장’으로, ‘기한’에는 ‘연기’로 쓴다.

❖ **“한다”,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한다”와 “해야 한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와 같이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한다”를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서로 관련되는 자치법규 문장에서는 “한다”와 “해야 한다”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시·도”의 표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순서로 적는다.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표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의 순서로 적는다. 자치구인 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구별하려면 자치구인 구는 “구(자치구를 말한다)”로 명백히 표시한다.

❖ 자치법규에서의 준수 사항 표현 방법

자치법규에서 준수사항을 각 호나 각 목으로 열거할 때에는 “----- 할 것”과 “---한다” 중 “----- 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나열할 때의 순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의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자치법규 조항의 인용·표시 방법

가. 해당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

동일한 자치법규 중에서 그 자치법규 안의 다른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조례”, “이 규칙” 등의 표시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조제○항”, “제○조제○호”,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등과 같이 인용되는 조항만을 표시한다.

나.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

어떤 자치법규 중에서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기하되, 둘 이상의 조항을 연이어 인용할 때에는 “「○○법」 제○조·제○조 및 제○조”와 같이 다른 법령의 제명은 처음 나올 때에만 표기한다. 다른 법령의 제명과 조항이 같은 항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조”라고 표현한다.

입법례 ▶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 해당 자치법규와 다른 법령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같은 조항에서 해당 자치법규와 다른 법령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 제○조·제○조 및 제○조와 이 조례 제○조”라고 구분하여 표기한다.

라. 부칙규정에서의 조문 인용

부칙규정에서 그 자치법규의 본칙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본칙 제○조”라고 표기하지 않고 본칙의 조문만을 표시하고, 그 자치법규 부칙 안의 다른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부칙 제○조” 등과 같이 부칙임을 표시하여 본칙규정을 인용할 때와 구별한다.

입법예시 ▶ 부칙에서 본칙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시 ▶ 부칙에서 부칙 안의 다른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제○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서식은 부칙 제○조제○호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마. 상위법령 또는 조례를 인용할 경우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한다.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에서 위임할 근거가 되는 내용을 실체근거조항과 위임근거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에서 실체근거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체근거조항과 위임근거조항이 서로 다른 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 실체근거조항만 인용하는 것이 불명확하면 실체근거조항과 위임근거조항을 함께 인용한다.

입법예시 ● 실체근거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실체근거조항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위임근거조항

❖ 조례에서 인용하는 경우

제○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5. (생략)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바. 조항에 나열된 각 호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의 표현방식

자치법규의 조항에 각 호가 열거되어 있고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내용상 각 호의 일부(예컨대, 제○호부터 제○호까지)를 모두 지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호만을 지칭하려면 다음과 같은 표현방식에 따른다. 다른 조항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입법예시 ● 그 인용대상 전부를 지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시 • 그 인용대상의 하나를 지칭하는 경우

“제○호, 제○호 및 제○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각 호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른 호의 내용이 해당 호의 필수요건이나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호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무규정 등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가 명백한 경우에는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생략하고, “다음 각 호의 ○○” 또는 “다음과 같다”로 간결하게 표현한다.²⁹²⁾

한편, 각 호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해 주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²⁹³⁾로 표현하거나 필수요건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나 각 호의 본문·단서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²⁹⁴⁾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²⁹⁵⁾

29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항만법」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9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등
29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등
295) 나열되는 요건들 중 어느 하나도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표현

가. 약칭

1) 의의

“약칭”이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자치법규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칭을 사용하면 입법을 할 때에 다소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일반 주민에게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익숙하지 않은 약칭은 그 약칭한 조항을 찾아가서 정식 용어를 확인해야 비로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칭은 정의 규정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의 규정은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 두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의 목적 조문 다음에 별도의 조문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용어가 나오는 조문에서 괄호 안에 그 의미를 밝히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조문에서 의미를 자세히 밝혀주고 이를 한 단어로 약칭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예컨대, “출자총액(취득하거나 소유하려는 다른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취득하거나 소유하려는 다른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한다)”이라는 방법으로 약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정의 조항에서 “이 법에서 “출자총액”이란 취득 또는 소유하려는 다른 국내 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 있다. 다만, 용어의 정의 규정은 통상적으로 총칙 규정에 위치하므로 찾기 쉬운 반면, 약칭은 어디에서 약칭을 했는지 찾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정의 규정으로 두되, 중요하지 않거나 인접한 조문 간에만 사용되는 용어는 약칭으로 둘 수도 있다.

2) 약칭의 위치

자치법규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최초로 나오는 용어가 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과 떨어져 있으면 자주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할 수 있다.

입법예시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을 촉진하기 위해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생략)

약칭하는 용어가 어떤 행정기관·법인 또는 사물의 고유한 명칭일 경우 근거조문이나 근거가 되는 장·절이 따로 있으면 그 장·절의 제목에서는 그 행정기관·법인 또는 사물의 고유한 정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근거조문이나 장·절에 앞서서 그 용어가 자주 사용될 때에는 최초로 나오는 조문에서 그 용어의 약칭을 사용하되, 해당 설립근거 조문이나 장·절의 제목에서는 정식명칭을 사용한다.

약칭하려는 문구가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곳에 나오면 약칭과 정확히 부합되는 곳에 약칭을 두도록 한다. 예컨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으로 지정 받은 자”라는 문구를 “(이하 “지정자”라 한다)”라고 약칭할 경우 후자의 부분에서 약칭한다.

3) 상위법령에서 약칭을 사용한 경우의 자치법규의 약칭

약칭은 약칭이 사용된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자치법규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약칭해야 한다.

4) 약칭 사용의 제한

약칭은 일반 주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나친 약칭 사용을 피하고, 필요할 때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되,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는 용어 정의 조항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방법을 취한다.

특히 명사로만 연결된 용어를 단순히 글자 수를 조금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약칭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자주 반복되지 않는 약칭은 각 조문 단위로 약칭하도록 한다(예: 이 조, 제○조 및 제○조에서 같다'와 같은 형식).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부득이하면 용어를 정의한 후 최초로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하되, 예외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 안에서 다시 약칭하는 경우²⁹⁶⁾도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피하도록 한다.

5) 약칭 사용의 정도와 방법

- ① 약칭은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으로 이해가 어려워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약칭하도록 한다.
- ② “A, B, C ~~”를 약칭할 때에는 “A”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 B, C ~~” 등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하면 “A등”으로 약칭하고 이 경우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 ③ 법령 제명의 경우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법령명이 길어지는 추세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 법령 제명도 약칭할 수 있다.²⁹⁷⁾
- ④ 약칭은 그 자체만을 보고도 생략된 어절이나 단어군의 의미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생략된 어절이나 단어군의 의미와 달리 오인될 수 있는 약칭은 피한다.

2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0호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및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297) 서로 다른 법령 제명 약칭을 사용하게 되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공되고 있는 법령 제명 약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⑤ 두 단어 이상으로 약칭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수식어 사용을 피하고 명사구로 해서 붙여 쓰되, 부득이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띄어 쓰도록 한다. 법률이나 하위법령의 제명을 약칭하는 경우에는 붙여 쓰도록 한다.

입법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긴급관세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 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경우에는 통상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등으로 약칭한다.

6) 다수 용어 약칭과 일부 용어 설명

여러 개의 용어를 하나로 묶어 약칭을 하면서, 그 약칭의 괄호 안에 여러 개의 용어 중 일부 용어에 한정되는 설명을 넣은 경우에 일부 용어에 한정되는 설명임을 밝히지 않고 괄호 안에 설명한 후 약칭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일부 용어에 한정되는 설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괄호 안에 그 용어만 별도로 한 번 더 명시하여 설명한 후 약칭하도록 한다.

입법예시 ● 설명과 함께 약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입법예시 ● 설명 없이 약칭만 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나. 준용(準用)

1) 의의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준용 방식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그러나 준용 규정의 속성상 준용하는 규정만으로는 무엇이 자치법규의 내용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다른 자치법규 규정을 함께 보아야 자치법규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자치법규 적용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우리 대법원 또한 “어느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 참조)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준용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입법경제의 실익과 수범자의 법규 이해의 난점을 비교 형량하여 준용할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내용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준용 방식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준용 대상 조문의 내용과 준용 조문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 상당히 유사한 규율 내용인 경우에만 준용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²⁹⁸⁾

298)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임산물굴취등의 타당성 검토에 준용하도록 한 것은 성질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지, 그 성질이 다른 부분까지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7. 7. 회신 14-0296 해석례 참조).

2) 준용문의 규정 방식

가) 기본 규정 방식

“○○에 관하여는 (~~에 관한) 제○조를 준용한다.”로 표현한다. 후단에서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제○조를 준용한다.”로 표현한다.

입법례 ▶ 후단에서 준용한 사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 ~ 3. (생략)

준용되는 조항의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이해될 수 없으면 다른 규정의 준용으로 인한 법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준용되는 조항의 각 부분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명백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입법례 ▶ 바꿔 읽기를 하여 준용한 사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준용의 범위를 정하면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민사조정법」 제39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이라는 전제를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방식은 준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수범자로 하여금 해당 조문의 취지를 직접

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단서나 후단 등을 통해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준용하도록 한다.

입법례 ▶ 단서에서 제외되는 준용 조문의 범위를 특정한 사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보험모집)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준용 규정의 인용

어떤 조문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할 때에 그 다른 조문이 준용하는 또 다른 조문까지 포함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문의 성질에 따라 “제○조(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에 따른”, “제○조에서 준용되는 제○조에 따라”,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에도 불구하고/제○조를 위반하여”로 표현한다.

입법례 ▶ 포함하는 준용 조문을 괄호로 규정한 사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입법례 ▶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에 따라”로 규정한 사례

군사법원법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군사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그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략)

입법례 ▶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를 위반하여”로 규정한 사례

양식산업발전법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10. (생략)
3.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생략)

3) 준용과 구별해야 할 표현

“준용한다”와 유사하긴 하나 구별해야 할 표현으로 “적용한다”와 “예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다.

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 사용할 때에는 “적용한다”로 표현한다. “적용”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문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나) “준용한다”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나, “예에 따른다”는 어떠한 법률의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고 할 경우에 사용한다.

입법례 「지방자치법」

-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생략)

4) 준용 규정 시 유의 사항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준용 규정을 둘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 가) 일반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는 없다. 다만,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에서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입법의 경우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위임(재위임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위임)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와 동위(同位)의 관련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는 있다.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는다.
- 나) 준용 방식을 취하는 경우 준용 대상은 개정된 규정보다는 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원칙적으로 준용 대상 규정과 준용 규정은 연동되어 있으므로, 준용 대상 규정이 개정되면 준용 규정에서도 개정된 준용 대상 규정의 내용을 계속 준용하게 된다. 이 경우 개정된 준용 대상 규정의 내용을 준용 규정에서 계속 준용하면 준용 규정의 성질에 맞지 않게 되거나 당초 준용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정된 준용 대상 규정을 계속해서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어떤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 조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자치법규 전체를 준용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준용 방식은 준용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준용 규정을 두기보다는 대상 조문을 특정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 라) 준용이 가지는 성격상 준용된 규정을 다시 준용하게 되는 경우 법문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준용되는 조문의 범위 등에 대해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준용된 규정을 다시 준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 문장 작성의 원칙

법령 문장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따른다.

1. 문장의 중요성

어떤 정책을 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 의지(입법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법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의도한 대로 그 내용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을 법제화할 때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율 대상이나 요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법령문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령문은 일반적인 글쓰기와 같이 먼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어문 규범에 따라 바르고 반듯한 문장으로 써야 한다.

또한 법령 특유의 구조와 형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은 조(條)를 기본 단위로 하고, 조는 다시 항(項)이나 본문·단서·후단 등으로 나뉜다. 지나치게 긴 문장, 주어-서술어 등이 꼬인 문장, 여러 내용이 뒤섞여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는 문장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상 논란을 일으키기 쉽다. 규정하려는 내용을 법령 단위나 형식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규정하면 법령 문장도 한결 간결해진다.

법령 문장은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일본어 투의 이중 부정, 불필요한 수식, 애매한 표현 등은 가급적 피한다. 더 나아가 국민이 법령 문장을 두 번, 세 번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계산식, 표,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법령문을 알기 쉽게 쓰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며,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2. 문장 바르게 쓰기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각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게 쓴다. 조의 제목에는 그 조에 규정할 주제를 분명히 밝히고, 그 주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규정한다.

조문은 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규정할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에는 통상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단서나 후단은 문장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나 부수적·보완적 사항을 규정할 때에 사용할 수 있으나, 문장의 주된 내용과 함께 규정할 만큼 내용 간에 긴밀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1) 한 조가 한 문장으로 된 경우

입법례 ▶ 「00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위임) 시장은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2) 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

조에 규정할 내용이 많아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적는다. 일반적으로 행위 주체나 세부 주제별로 나누거나 일련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각 항도 한 가지 주제로만 구성하며, 한 조문에 규정하는 항의 개수는 원칙적으로 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구분한 경우

행위 주체에 따라 권한이나 의무를 달리 규정할 때에는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나누어 서술한다.

입법례 ▶ 「OO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이용료) ① OO군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부 주제별로 항을 구분한 경우

조에 규정될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뉘질 수 있으면 그 세부 내용들을 각각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다.

아래 조문은 행정청의 직무 수행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2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입법례 ▶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절차에 따라 항을 구분한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정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이나 업무 순서에 따라 항을 나누어 규정한다.

입법례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후단 생략)

④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후단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생략)

3) 단서를 규정하는 경우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속사 ‘다만’을 사용하여 단서로 규정한다.

단서의 앞 문장을 본문이라고 부르며, 단서는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특정 행위 주체에만 행위·절차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다.

입법례 ▶ 본문의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한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략)

입법례 ▶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완화한 사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입법례 ▶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한 사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 수위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 4. (생략)

4) 후단을 두는 경우

후단은 통상 ‘이 경우’로 시작하며, 그 앞 문장을 ‘전단’이라고 부른다.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할 때에 규정한다. 또한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에 대응하는 조치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입법례 ▶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 ③ (생략)

-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 4. (생략)

⑤·⑥ (생략)

입법례 유의 사항이나 요건 등을 보완하여 설명한 사례

OO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입법례 전단에 대응하는 의무를 규정한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⑥ (생략)

5) 단서나 후단을 다른 향으로 규정하는 경우

가) 본문 또는 전단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경우

단서나 후단으로 규정할 내용이 많거나 본문 또는 전단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아 별도의 세부 주제나 절차로 구분될 때에는 다른 향으로 규정한다.

단서는 주된 내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후단에 비하여 다른 향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적다. 소송 실무에서는 본문인지 단서인지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서를 다른 향으로 구분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입법례 ▶ 단서를 다른 항으로 규정한 사례²⁹⁹⁾

「OO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중전)	「OO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현행)
<p>제10조(회의) (생략)</p> <p>③ <u>협의회</u>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의결한다</u>. 다만, <u>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u>.</p>	<p>제8조(회의) (생략)</p> <p>④ <u>협의회</u>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의결한다</u>.</p> <p>⑤ <u>협의회</u>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u>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u>.</p>

입법례 ▶ 후단을 다른 항으로 규정한 사례

「OO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중전)	「OO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현행)
<p>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u>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나) 한 조문이나 항에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조문이나 항에는 주된 내용 외에 단서나 후단을 규정할 수 있어 두 문장까지는 종종 쓴다. 그러나 조문이나 항에 세 문장 이상 규정한다든지 단서와 후단을 동시에 규정하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이러한 경우 일부 내용을 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299) 단서를 다른 항으로 신설하는 경우 전항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제○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구를 문장 앞에 쓸 수 있다.

입법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종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현행)
<p>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p> <p>①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u>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8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등”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u></p>	<p>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p> <p>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u>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u></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u>조합원</u>”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u>협동조합</u>”은 “<u>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u>”로 본다.</p>

나. 문장 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법령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문장 성분의 형태나 배열 등이 일반적인 글쓰기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문장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말은 조사가 명사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조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문장 성분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적절히 배치하면 보다 쉽고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이 될 수 있다.

1) 주어를 분명히 밝힌다.

가) 법령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어를 쓴다.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하며 법령 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말에서는 종종 주어를 자주 생략하고 문맥과 정황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령문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특히 행정권한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³⁰⁰⁾ 법령문의 주어는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또한 법령문의 주어가 의무 이행자인 경우에도 의무 이행자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입법례 ▶ 주어가 행정권한의 주체인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입법례 ▶ 주어가 행위나 의무의 이행자인 사례

00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0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3338 판결례 참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례 참조 및 광주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1730 판결례 등 참조

나) 주어에는 조사 ‘이/가’, ‘은/는’을 적절하게 쓴다.

주어는 행위의 주체로서 주격 조사 ‘이/가’와 주어임을 나타낼 수 있는 보조사 ‘은/는’³⁰¹⁾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주격 조사 ‘이/가’는 주어에 붙어 주어임을 분명히 나타내지만, 주어에는 보조사 ‘은/는’도 많이 사용된다. 법 문장, 특히 복문에서 ‘이/가’는 종속절의 주어에 쓰이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주절의 주어에는 보조사 ‘은/는’을 주로 사용한다.

입법례 ▶ 주절의 주어와 조건절의 주어

OOOO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권 중지 또는 취소)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OOOO쌀을 생산·유통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한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둔다.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령문에서도 기본적인 어순을 따르고, 법령문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령 조문의 전개상 목적어 등 다른 문장성분이 화제(또는 주제)가 되어 ‘~는’ 등의 형태로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으므로 앞뒤 조문의 흐름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입법례 ▶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사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301) ‘은/는’은 보조사로서 주어나 목적어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조사가 붙은 용어가 주어로 사용되었는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유의해야 한다.

입법례 ▶ 주어가 수식어 다음에 오는 사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③ (생략)

입법례 ▶ 부사절 등이 있어 주어가 문장 가운데 있는 사례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2. (생략)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라) 예외적으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문에는 주어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장 내에 동일한 주어가 반복되거나 단서 또는 후단의 주어가 본문 또는 전단의 주어와 같은 경우로서 주어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주어가 일반 국민이나 국가·정부 등인 경우, 법령 소관 부처의 장이나 집행기관의 장 등으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 가까운 조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처분 또는 재판의 당사자인 경우 등으로서 주어를 예측 가능하고 법리적으로나 해석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주절의 주어와 조건절의 주어가 반복되는 경우

복문 형식의 법령문에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거나 의미상 동일할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통상 주절의 주어는 ‘은/는’으로, 종속절의 주어는 ‘이/가’의 형태로 쓰인다.

법령문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로 ‘은/는’을 많이 쓴다. 따라서 주절의 주어(은/는)를 문장 처음에 두고, 주절과 같은 조건절의 주어(이/가)는 생략할 수 있다.³⁰²⁾

입법례

「관광진흥법」 (중전)	「관광진흥법」 (현행)
<p>제53조(조사·측량) 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53조(조사·측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② 주어가 일반 국민인 경우

주어가 법령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 누구나’를 지칭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될 때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입법례 「OO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누구든지]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주어가 국가·정부 등인 경우

국가배상 등과 같이 법령의 전체 맥락이나 정책 성격상 국가 등이 행위 주체임이 자명한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302) 한편, 주절의 주어(은/는)를 쓰면서 종속절의 상황에도 초점을 두게 되면, ‘~는 -할 경우에는’과 같이 동일한 표현이 반복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종속절의 주어 ‘이/가’를 명시하고 주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법령 문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절의 주어(은/는)는 그대로 두고, 종속절을 나타내는 용어 ‘~경우에는’, ‘~때에는’을 ‘~ 경우(에)’나 ‘~때(에)’로 바꿔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제3편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입법례 ▶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 1. · 2. (생 략)
- ② ~ ⑦ (생 략)

④ 주어가 처분 또는 재판의 당사자인 경우

소송법에서 항소 등을 하는 주체는 당사자(대리인 포함)이므로 모든 절차마다 그 주체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입법례 ▶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① [당사자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⑤ 문장에 행위 주체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문장 자체가 행위 주체를 예정하고 있어 주어를 쓰면 동어 반복이 되는 경우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의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이라는 조건에 ‘세법을 해석·적용하려는 자는’이라는 행위 주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법 제61조의 경우에도 주어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이므로 굳이 주어를 쓸 필요가 없다.

입법례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하려는 자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② ~ ⑤ (생 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생 략)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③ ~ ④ (생 략)

2) 목적어를 분명히 밝힌다.

가) 목적어를 분명히 쓴다.

목적어는 동작이나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성분으로 ‘무엇을’의 형태를 띤다.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주어와 함께 꼭 밝혀 주어야 할 문장성분이다.

나) 조사 ‘을/를’을 활용하여 목적어의 형태를 갖춘다.

목적어임을 명확히 하려면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입법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종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현행)
<p>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p> <p>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p> <p>②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다) 목적어는 원칙적으로 서술어 앞에 둔다.

법령 문장에서는 강조할 목적으로 혹은 다른 조문과 어순을 통일하기 위해 목적어가 앞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어순에 맞게 ‘주어 + 목적어 + 서술어’의 순서로 문장을 구성한다.

다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어가 생략됨에 따라 부득이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입법례 목적어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하는 사례

00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00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난독증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례 ▶ 예외적으로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사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8.

③·④ (생략)

3) 하나의 주어에 하나의 서술어를 원칙으로 한다.

문장의 기본 단위는 주어-서술어이며, 그 둘이 짝을 지어 주술관계를 이룬다. 법령문의 경우에도 주술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형식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법령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가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주술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³⁰³⁾

가) 주어-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경우

입법례 ▶ 「경찰공무원법」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②·③ (생략)

나)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2개 이상 쓰는 경우

법령문 작성 시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여러 개 쓰려면, 각 행위들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303) 주어-서술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경우는 복문에 관한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입법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 ③ (생략)

④ 구조·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4) 수식하는 말(수식어)은 수식을 받는 말(피수식어) 가까이 둔다.

수식하는 말(수식어)은 수식을 받는 말(피수식어) 앞에 두는 것이 기본 어순이다. 수식어는 뒤에 오는 말을 꾸미거나 한정하는 문장성분이기 때문이다.

가) 관형절(구)

관형어는 뒤에 오는 명사, 대명사 등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을 말한다.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놓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식 대상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수식어의 위치를 주의해서 쓴다.

입법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략)

나) 부사절(구)

부사절(구)은 동사·형용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따라서 수식을 받는 동사·형용사나 문장 앞에 두어야 한다.

법령문에는 아래 입법례와 같이 부사절(구)이 둘 이상 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되기 전의 조문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제39조제2항에 따라’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앞에 두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끝나’는 문장 전체(‘공단이~반환하는 경우에는’)를 수식하므로 문장의 맨 앞에 두도록 하는 등 부사절(구)을 수식하는 대상 앞에 각각 위치시켜 수식 관계를 명확히 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입법례 ● **둘 이상의 부사절(구)에 대해 수식 관계를 명확히 한 사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p>제52조(환급금의 총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p> <p>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p> <p>1. · 2. (생략)</p> <p>3. <u>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u>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각 목 생략)</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52조(환급금의 총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p> <p>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p> <p>1. · 2. (생략)</p> <p>3. <u>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u>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각 목 생략)</p> <p>4. (생략)</p> <p>② (생략)</p>

다. 명확하게 표현한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1) ‘또는’, ‘및’으로 구나 단어를 나열할 때에는 앞뒤 연결 관계에 주의한다.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며, ‘및’은 나열되는 사항을 모두 가리킴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다. ‘또는’과 ‘및’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나열된 둘 이상의 명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말을 동시에 받거나 뒤에 나오는 말을 동시에 수식할 때에는 ‘또는’이나 ‘및’으로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또는’, ‘및’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 구조를 달리하거나 문장 전체를 풀어 써 준다.

가)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수식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는’으로 이어진 명사구(A 또는 B) 앞에 긴 수식어가 붙으면, 그 수식어가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쪽 명사(A)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이 경우에는 수식어의 내용을 명사구(A 또는 B) 뒤에 풀어 쓰는 등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어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한다.

적용사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현행)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적용사례)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 또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일 것

나) ‘또는’이 ‘해당하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쓴다.

다음 예시와 관련하여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A)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B)이 모두 변경되더라도 A나 B 중 하나만 표시해 주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³⁰⁴⁾ 이와 같이 ‘또는’이라고 표시하면서도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더 구체적으로 써 준다.

적용사례 ▶

「건축법 시행규칙」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 (적용사례)
<p>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u>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u> 	<p>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내화·방화·피난 및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u>

2) 의미가 불명확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법령문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아래 적용사례를 보면 현행 법령문에서는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수식을 받는 대상이 ‘계곡’인지 ‘목욕·세탁 행위’인지 혼란스럽고, 수식 대상이 ‘목욕·세탁 행위’라고 보더라도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목욕·세탁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규정의 내용을 흐리는 수식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04)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26 해석례: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법령해석례 참조

적용사례

「자연공원법 시행령」(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적용사례)
<p>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u>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u></p>	<p>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u>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u></p>

3) 중의(重義)적, 다의(多義)적인 표현은 피한다.

뜻이 이중으로 읽히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은 피한다. 다음 예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의미로 쓴 것이나, ‘기피신청을 접수한 사람’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므로 기피신청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입법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중전)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현행)
<p>제38조(제척 및 기피) ①·② (생략)</p> <p>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징계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심사 전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p>제38조(제척 및 기피) ①·② (생략)</p> <p>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 심사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4) 이중 부정문은 되도록 긍정문으로 쓴다.

번역 투의 이중 부정문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중 부정문은 부정 표현이 중복되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선을 줄 수 있고 문장도 길어진다. 내용을 의도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이중 부정을 써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쉬운 긍정문으로 쓴다.

적용사례 ▶

□ ‘~하지 아니한 경우 ~하여서는 안 된다’ → ‘~ 경우에만 할 수 있다’

「OO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OO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사례)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농산물, 가공품 및 음식점 등과 그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u>지난 경우</u> 에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된 후에 ~할 수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현행)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적용사례)
제37조(보상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u>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u> ③·④ (생략)	제37조(보상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u>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u> ③·④ (생략)

5) 지시어의 내용을 직접 쓴다.

법 문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와 같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표현을 흔히 쓰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다만, 가리키는 내용을 직접 쓸 경우에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입법례 ▶ ‘같다’가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종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현행)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종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현행)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생략)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생략)

입법례 ▶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내용을 직접 써 준 경우

「OO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전)	「OO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입법례 ▶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을 직접 써 준 경우

「OO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종전)	「OO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현행)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교통량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① 교통량감축활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차는 교통량 계산에서 제외한다.

6) 호나 목으로 구분하는 경우

한 문장에 일정한 기준에 속하는 여러 사항들을 한꺼번에 나열하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항을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일부가 수식을 받고 있는 경우 수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경우 호나 목으로 나누어 규정하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고 연결 관계도 명확해진다. 이 경우 각 호 간 또는 각 목 간의 관계는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

입법례 ▶ 호의 내용을 각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종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현행)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u>상업사용인을 말한다.</u></p> <p>6. ~ 10. (생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이사</p> <p>나. 대표이사</p> <p>다. <u>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u></p> <p>라. 감사</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u></p> <p>바. <u>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u></p> <p>7. ~ 20. (생략)</p>

적용사례 ▶ 하나의 호를 두 개의 호로 나눔으로써 결격사유를 명확히 한 사례

「세무사법」(현행)	「세무사법」(적용사례)
<p>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u>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p>	<p>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u>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p>

「세무사법」(현행)	「세무사법」(적용사례)
중에 있는 사람	에 따른 징계로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 10. (생략)	7. ~ 11. (생략)

라. 지나친 생략을 하지 않는다.

1)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 성분은 생략하지 않는다.

문장에서 필요한 문장성분이 빠져 있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문장의 의미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다음 예시는 ‘피후견인을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라는 의미로 쓴 것이나, ‘피후견인을 감화하거나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의 의미로 오인될 수 있다. ‘감화기관’을 ‘감화’로 줄여 쓰기보다는 ‘기관’까지 쓰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입법례

「민법」(법률 제6591호)	「민법」(법률 제10429호)
<p>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u>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u>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u>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u>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또한 다음 예시의 경우 ‘조성’은 서술어 성격을 가진 명사로서 ‘분위기 조성’처럼 앞말에 목적어 성격의 대상을 필요로 하므로 법령 전체의 맥락을 보아 앞부분에 적절한 내용이나 설명을 보충한다.

적용사례 ▶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현행)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적용사례)
<p>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생략)</p> <p>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 6. (생략) 	<p>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생략)</p> <p>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교육 여건(환경)</u>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u>교육 여건(환경)</u>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 6. (생략)

2) 명사연속어구를 쓰지 않는다.

문장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열되어 있으면 형식적으로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불충분해지기 쉽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빠진 내용을 추가하고 조사나 서술어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쓴다.

입법례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종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현행)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종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현행)
<p>가. (생략)</p> <p>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u>그</u> <u>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u>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p> <p>다. (생략)</p> <p>3. ~ 6. (생략)</p> <p>② (생략)</p>	<p>가. (생략)</p> <p>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u>그</u> <u>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u>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p> <p>다. (생략)</p> <p>3. ~ 6. (생략)</p> <p>② (생략)</p>

마. 한눈에 들어오도록 알기 쉽게 표현한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을 달리하면 훨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할 수 있다.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규정할 내용을 숙지하고 국민이 가장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문장을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작성하고 계산식,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문장은 되도록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는 문장 등은 길고 복잡하므로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한다.

가) 중복되는 표현을 생략한다.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면 중요한 부분만 남게 되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진다.

입법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중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현행)
<p>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u>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2. ~ 6. (생략)</p>	<p>제7조(도립공원위원회·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u>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u>(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 ⑦ (생략)</p>

나) 불필요한 표현을 생략한다.

법령문에서 ‘해당한다’, ‘-금액’ 등의 용어를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한다’는 조건이나 범위에 들어맞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므로 수치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한다’를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과태료’에 숫자가 대응되는 경우 돈의 액수(금액)를 가리키는 것이 당연하므로 ‘과태료 금액’이라고 쓰지 않는다.

입법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중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현행)
<p>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u>100분의 10에</u>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u>100분의 50에</u>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p>	<p>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u>100분의 10에</u> 입원기간 중 식대의 <u>100분의 50을</u> 더한 금액</p>

2) 필요한 경우 표, 계산식 등을 이용한다.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 표·계산식·그림 등 시각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기존의 서술 중심의 평면적인 체계로는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기 쉽지 않다. 수학적 내용이나 사물의 형상, 추상적인 개념·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표·계산식·그림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한다. 또 법령상 별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표·도표 등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에 직접 규정한다.

가) 표를 활용하는 경우

입법례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2. ~ 7. (생략)

②·③ (생략)

나) 계산식을 사용하는 경우

입법례

「OO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종전)	「OO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현행)
<p>④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 반올림하되,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p>	<p>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활동을 한 경우 경감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 반올림한다. 이 경우 승용차10부제, 승용차요일제(5부제포함) 및 승용차2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ext{부담금 경감률(\%)} = [1 - (1-a) \times (1-b) \times (1-c)] \times 100$ <p>(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p> </div>